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지 방 자 치 단 체 기 금 관 리 기 본 법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17836호, 2021.1.5.공포, 2021.4.6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기준 규정(안 제3조의2)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위탁대상의 기준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,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,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,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의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하며 1회 갱신 가능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20. ~ 2021. 3. 2.)

3) 행정규제 : 규제 비대상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 (기금 관리·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및 기간) ①법 제6조제2항

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 할 때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, 기금 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,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의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 (기금 관리·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및 기간)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 할 때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, 기금운용에 적합한 재무상태와 건전성,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하여야 한다.</u> <u>②기금의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711